**아리랑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“아리랑”으로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① 본 동아리는 역사 세미나와 교외 답사를 통해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하고 동아리원들의 교양 지식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으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최소 한학기로 한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임원진의 선출은 총회에서 동아리 내 투표로 선출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.

② 부회장은 회계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 자격은 본교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,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 및 한 학기에 최소 1회 동아리 세미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임원진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.

1. 매 학기 초 희망자에 한해 지원을 받는다.

2. 동아리방에서 임원진과의 간단한 미팅 후 가입서를 작성한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① 주 1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역사 세미나를 진행한다.

② 학기 중 1~2회 서울 근교에서 답사를 진행한다.

**제 2조 [회의]**

① 본 동아리는 한 달에 1회 정기 회의를 진행한다.

② 본 동아리의 정기 회의에는 임원진 및 참석을 희망하는 동아리 회원들이 참석한다.

**제 3조 [총회]**

① 동아리 회원들이 모두 모이는 **대**총회는 학기말에 시행한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임원진이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② 본 동아리의 한 학기 회비는 재학생 2만원, 신입생 1만 5천원으로 한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① 부회장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0.03.31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